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 (안 제3조)
 - 도시지역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지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
 -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%, 300만원 이내
- 다. 지원신청, 지원대상자의 선정 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보조금의 반환 (안 제6조 ~ 제7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도시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
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사항
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지원대상자의 선정
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
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

【관계법령】

○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 7. 16.>[전문개정 2011. 8. 4.][제목개정 2014. 5. 28.]